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477호

**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1·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
위한 공람·공고**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 및 제2023-471호(2023.10.26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120호(2020.9.1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(5-1구역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72호(2021.6.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(5-3구역)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1·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1·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1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1·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위치및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90-3 일대 / 7,672.4㎡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세운5구역PFV(주) 대표 권옥선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14층(여의도동, 세우빌딩)
- 라. 사업기간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68개월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
 - 세운5-1구역 : 2020. 09. 16.
 - 세운5-3구역 : 2021. 06. 02.

2. 공람개요

- 가. 공고기간 : 2024.5.1.(수) ~ 2024.5.15.(수)(14일간)
- 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☎02-3396-5732)
- 다. 변경내용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1·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

- 라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
- 마. 공고방법 : 구보 게재

3. 기타사항

-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,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